

●창원출입국·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-17호

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6일

창원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장

성명	생년월일	성별	종전국적	예정등록기준지	한국국적 상실일	상실사유
허준	1982.**.**	남성	미국	서울특별시 강북구 ****	2012.02.22	외국국적취득
정진철	1979.**.**	남성	미국	서울특별시 마포구 ****	2018.02.14	외국국적취득
김정남	1951.**.**	여성	미국	전라남도 장성군 ****	1976.08.18	외국국적취득
정기엽	1957.**.**	여성	미국	충청남도 부여군 ****	2003.05.28	외국국적취득
박재용	1973.**.**	남성	미국	경상남도 창원시 ****	2014.07.10	외국국적취득
송나영	1973.**.**	여성	미국	경상남도 창원시 ****	2014.09.25	외국국적취득
이원희	1950.**.**	남성	미국	경기도 광주시 ****	2019.07.23	외국국적취득
정현윤	1998.**.**	여성	미국	부산광역시 중구 ****	2017.06.22	외국국적취득

●춘천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-13호

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6일

춘천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

성명	생년월일	성별	종전국적	예정등록기준지	신고수리일
전다솜	2019.**.**	여성	캄보디아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****	2020.06.09

●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-26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-10호, 2020. 5. 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6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

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별표 제1호(신규화학물질)의 고유번호 “2019-362”란, “2019-578”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, 고유번호 “2019-533”란을 삭제하고, 고유번호 “2015-13”란, “2015-78”란, “2015-99”란, “2016-160”란, “2016-224”란, “2016-325”란, “2016-413”란, “2016-603”란, “2016-605”란, “2016-606”란, “2016-651”란, “2016-654”란, “2016-702”란, “2016-715”란, “2016-752”란, “2016-813”란, “2016-827”란, “2016-935”란, “2016-952”란, “2016-1053”란, “2017-28”란, “2017-34”란, “2017-146”란, “2017-151”란, “2017-161”란, “2017-197”란, “2017-683”란, “2017-799”란, “2017-916”란, “2017-922”란, “2017-924”란,

“2017-1128”란, “2017-1150”란, “2018-13”란, “2018-136”란, “2018-153”란, “2018-186”란, “2018-254”란, “2018-371”란, “2018-377”란, “2018-459”란, “2018-534”란, “2018-605”란, “2018-758”란, “2019-92”란, “2019-161”란, “2019-170”란, “2019-382”란, “2019-470”란, “2019-472”란, “2019-564”란, “2019-567”란, “2019-580”란, “2019-604”란, “2019-609”란, “2019-610”란, “2019-666”란, “2019-694”란, “2019-711”란, “2019-722”란, “2019-775”란, “2019-818”란, “2019-827”란, “2019-865”란, “2019-869”란, “2019-910”란, “2019-913”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고유번호 “2019-949”란 다음에 “2020-1”란부터 “2020-169”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게재 생략

○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(www.nier.go.kr>법령정보>고시)에 게재되어 있음

●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0-8호

습지보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「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」에 대한 출입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6일

원주지방환경청장

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

1. 근 거 : 습지보전법 제15조제2항
2. 위 치 :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 170 일원
3. 기 간 : 2020. 8. 6 ~ 2025. 8. 5(5년)
3. 사 유 : 용늪의 육지화 등 습지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,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생태자원의 소실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함
4. 위반 시 벌칙 : 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
5. 면 적 : 용늪 습지보호지역(1.36km²)내로서 아래 경위도 좌표 내 구역
6. 부분 개방사항
 - 개방구역
 - 좌표 번호 33-16간 군작전도로 및 좌표 번호 16-15간 임도
 - 좌표 번호 8-1에서 8-28간 구간
 - 개방기준 : 생태탐방을 목적으로 인제군 및 양구군을 경유하여 출입허가를 득한 자(1일 250인 이내)
7. 개방 제한
 - 큰 용늪 내부(8-19에서 8-28 구간)를 포함한 개방구역은 개방에 따른 식생, 수리·수문 등 습지생태계 변화 및 영향 여부에 따라 고시 기간(2020.8.6~2025.8.5) 중에도 개방이 일부 제한(출입허용인원, 개방 구간)될 수 있음

붙임 :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경계좌표(경위도 좌표)